근로자 파견 계약서

용역명	2015년 운행제한(과적) 단속차량 운전원 용역					
발주처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이하 "사용사업주"이라 함)와 계약상대자(이하 "파견사업주"이라 함)는 "파견사업주"의 파견 인력이 "사용사업주"의 사업 부분의 업무 일부를 보조 수행함에 있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파견근로(이하 "파견"이라 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사용사업주"의 요청에 의하여 "파견사업주"의 인력을 파견하고, 동 파견인력이 "사용사업주"의 업무를 성실히 보조 및 수행하고, "사용사업주"는 약정한 금액의 파견 대가를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파견근로자의 신분)

- ① "과견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② "파견사업주"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운전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인력에 대해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 ③ "파견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가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제3조(파견근로자의 수)

파견인원은 "사용사업주"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인원의 증감에 따른 변동사항은 붙임 제1호에서 별도로 정한다.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사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동이 있을 시는 "파견사업주"는 즉시 타 인력으로 대체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4조(계약기간 및 파견근로기간)

- ① 본 계약은 착수일로부터 1년간(2015.3.1.~16.2.29)으로 한다
- ② 파견 근로기간은 파견 근로자의 증가 또는 파견 근로자의 사직 등의 이유로 인하여 계약 기간 내에 근로자가 변동이 있을 시는 새로이 배치된 근로자의 근무 일자를 최초 파견근로 계약일자로 산정하며, 붙임제1호와 같이 운영한다.

제5조(계약조건의 변경)

용역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6조(업무내용 및 근무장소)

① 업 무: 기동단속차량(승합차) 운전. 차량관리 및 단속업무 보조(안전 유도 업무 등)

② 근무형태 : 주. 야 24시간 3개조 근무 또는 주간 근무

—————————————————————————————————————	인원	근무형태	근무 시간			
구 분			1일차	2일차	3일차	
주간 및 야간	33명	3교대	09:00~18:00	18:00 ~ 익일 09:00	휴무	
주간	6명	월~토	07:00~16:00	※ 1주 48시간	근무	

※ '주간 및 근무' 와 '주간' 근무의 순화 근무

③ 근무장소 : "파견사업주"가 파견하는 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지정하는 다음의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합 계	근무	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단속차량 17대	주간 및 야간	11대	2대	2대	2대	1대	2대	2대
	주간	6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운전원 39명	주간 및 야간	33명	6명	6명	6명	3명	6명	6명
	주간	6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제7조(파견근로 사업장에 관한 사항)

① 사업장의 명칭 : 서울특별시 도시안전본부 교량안전과(산하 6개 도로사업소 분산근무)

②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2층

제8조(근로자 적정 임금의 보장)

- ① "파견사업주"는 예정가격 산정시 설계내역(산출기초)에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 체결한 계약의 해약이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 가를 제한한다.
- ③ "과견사업주"는 계약 체결시 "사용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용역비 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운전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세부산출내역서)

① "파견사업주"는 용역계약 체결 후 "사용사업주"의 설계내역서를 참고하여 세부산출내역서를

작성후 "파견사업주"의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확정된 내용을 문서로서 "사용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운전원의 채용과 결원 보충)

- ① "파견사업주"는 운전원의 채용 또는 운전원의 휴가사용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운전원을 선발하여 "사용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후 대체투입한다.
- ② "파견사업주"가 정한 투입인력의 자격기준에 따라 그 기준에 맞도록 운전원을 채용하거나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의 대가)

-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 파견에 대한 대가로써 파견료를 지불한다.
- ② 파견료는 1개월 단위로 정산하며 "파견사업주"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파견료를 "사용사업주"에게 청구한다.
 - 이때 1개월 미만자는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③ 계약금액은 기본급, 각종수당, 퇴직충당금, 보험료, 국민연금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 ④ 계약조건에서 정한 운전인원의 결원으로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불이행 일수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월정지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산출기초 시간 단가적용)
- ⑤ 용역비의 지급신청은 용역업무의 실적에 대하여 "사용사업주"가 지정한 검사자의 검사조서를 붙임하여 청구한다.
- ⑥ 본 조항과 관련하여 "사용사업주"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파견사업주"은 즉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파견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업체 관리)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14조(포괄적 재하청 금지)

"파견사업주"은 "사용사업주"와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제15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 ② "파견사업주"는 기성금 청구시 39명 전원에 대한 임금지급대장을 매월 "사용사업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사업주"는 필요시 운전원의 월별임금 지급내역과 보험료(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석면피해구제보험) 국민연금 납입내역, 퇴직충당금 적립내역(계획포함)등의 증빙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사업주"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지휘감독 및 임무)

① "사용사업주"와 "과견사업주"는 아래와 같이 사용사업관리책임자 및 과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 하여 과견근로자를 관리한다.

구 분	부 서	직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
사용사업관리					
책임자					
파견사업관리					
책임자					

- ②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 가.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 나. 관리대장의 작성, 보존
 - 다. 본 계약이행에 관한 업무연락, 조정 및 협조
- ③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의 관리책임자의 변동이 있을시, 또는 인원의 증감에 따른 지휘 명령권자에 관한 사항은 상호 재확인한다.

제17조(고용관계의 확인)

본 계약에 의거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의 파견인력에 대해 업무와 관련한 지시, 감독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근무방법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직접적 고용관계 및 기타 근로기준법 등 제반 관계법령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귀속한다.

제18조(파견 근로자의 교체)

파견 근로자가 자격기준을 상실하거나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근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비위사실의 발견, 기타 필요로 하는 업무에 대해 업무 수행이 원활 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교 체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사업주"는 반드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19조(휴식시간 및 휴일근무)

휴게 시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사용사업주"의 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한다.

제20조(파견 근로자의 자격기준)

- "을"은 파견근로자를 선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자격이 있는 자를 선임하여 배치한다.
- ① 압찰 공고일 현재 55세 ~ 68세 (1947. 1. 1~ 1960.12.31. 출생한 자) 1종 보통이상 유효한 면허 소지자 및 운전경력 3년 이상인 자
- ② 운전적성 정밀검사 및 신체검사를 받은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된 자는

채용할 수 없다.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정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운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 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제21조(건강진단)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채용 시 채용신체검사를 징구하고 파견기간 중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의 결과를 "사용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시설 등의 제공)

- ① "사용사업주"는 본 계약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며 "파견사업주"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 ② "과견사업주"의 파견인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과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3조(손해배상)

- ① 파견근로자가 근무수칙을 위반하거나 장비의 일상점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손실은 "파견사업주"가 보상한다.
- ② 파견근로자가 근무시간외에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는 "파견사업주"가 전액 보상한다.
- ③ 파견근로자의 고의로 "사용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파견사업주"가 책임진다.
- ④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의 차량 임차계약에 의한 차량손해면책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파견사업무"의 면책금은 차량임차 용역 계약시 체결한 차량손해면책금(10만원)으로 한다.

제24조(안전 및 보건)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의 파견근로자가 사업장에 근무함에 있어 위험 및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2항에 의거 당해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제25조(복무)

"파견사업주"의 인력은 "사용사업주"의 복무규정을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파견사업주"의 업무처리규정이나 복무규정을 따를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고, 단속원과의 복장 통일을 위해 단속원과 동일한 조끼를 지급하여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

(전면 서울시 슬로건 부착)

제26조(근무수칙준수 및 보안유지의무)

- ① "사용사업주" 와 "과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근무수칙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교육하다.
- ② "사용사업주" 와 "파견사업주" 의 파견인력은 업무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를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외부로 유출,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파견사업주" 는 은 이에 필요한 교육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소집교육)

"과견사업주"는 과견근로자가 근면,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고 업무수행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사업주"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집교육을 실시하며, 사전에 "사용사업 주"과 혐의 처리 한다.

제28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본 계약상의 합의사항 및 파견되어 근무할 사업장의 복리후생시설 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 관련법규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제29조(양도금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와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30조(붙임 1의 운영)

"사용사업주"와 "과견사업주" 쌍방은 계약상 편의를 위하여 인원의 변동 및 기타 변경사항이 발생시 붙임1을 작성하여 운영한다.

제31조(채권양도 및 하도급의 금지)

- ① "파견사업주"는 이 계약으로 인하여 "사용사업주"로부터 지급 받을 미확정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수인과 연서로 사전에 "사용사업주"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파견사업주"는 본 계약에 따라 행할 도급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사업주"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제32조(관계법령준수)

① "과견사업주"는 운전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및 파견근로자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노동관 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3조(감액 및 환수조치 등)

- ① "사용사업주"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내용에 있어 계약금액 또는 지급액이 적정금액보다 과다 계상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3의 기관으로부터 과다 계상 되었다고 지적되었을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그에 대하여 감액, 환수 또는 정산 조치할 수 있으며 "과견사업주"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② 용역시행 중 기간 및 인원변동으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안될 시 세부산출내역의 해당인원에 대해 퇴직금 을 정산·화수 하여야 한다.
- ③ 결근시 세부산출내역의 시간단가 별로 적용하여 정산하여야 한다.(준공 전)

제34조(계약해지)

-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나. 본 계약서상의 용역수행 기한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파견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라. "사용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파견사업주"에게 통지한다.
- ② "사용사업주과 와 "파견사업주"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개월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을 때에는 "사용사업주" 와 "파견사업주" 쌍방중 귀책사유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인수업체가 그 업무를 담당할 때까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운전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 ③ "과견사업주" 또는 그 운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과견사업주"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전후에 걸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사용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 또는 민원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였을 때
 - 나. 노사분규로 인하여 운전용역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 다. "사용사업주" 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 라. "파견사업주"가 이 계약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본 용역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한 업체 로서 부적당하다고 "사용사업주"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35조(타 법령의 준용 등)

이 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특수조건에 의하거나,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등 관계법령과 민법 등의 규정과 판례 등에 따른다.

제36조(계약서의 보관)

본 운전용역원 용역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사용시업주"와 "파견시업주"가 각각 기명날인하고 1부씩 보관한다.

제37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 ① 계약상의 문구해석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사용사업주"의 해석에 에 따르며, "사용사업주"의 해석에 의하여 조정되지 아니할 때는 "사용사업주" 또는 "파견사업주"의 관할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 ② 본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거 처리한다. 다만, 관련법규에도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문서로 합의하여 정하며, 문서로 합의한 사항도 본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38조(근로조건 확약사항)

붙임 제2호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다.

2015년 2월 일

"사용사업주"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파견사업주"

(붙임 제1호)

본 계약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세부사항을 부록으로 계약한다.

1.파견근로자 현황

업무내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파견기간	파 견 료	연락처
'15 운행제한 (과적)단속차량 운전원						

※ 상기 파견료는 1인 1개월 기준 부가세 포함금액임.

※ 연간 총 계약단가 : ₩

원(부가세 포함)

2. 근 무 시 간

- 주간 및 야간 근무 : 3개조 2교대 근무 → 주간 : 09:00~18:00(8 시간 근무 1시간 휴식) / 야간 : 18:00~09:00(13 시간 근무, 2시간

휴식), 비번: 휴식

- 주간 근무 : 07:00~16:00(월~토, 8시간 근무, 1시간 휴식)
- ※ 명절 연휴기간, 우천 또는 폭설 등으로 운행제한 차량 단속이 필요하지 않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무임으로 휴무하게 할 수 있음.

2015년 2월 일

"사용사업주"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파견사업주"

【붙임 제2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보통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등 관계법령	이 정	한
_Ł 참가자격제힌	조치	등
(A)		
(인)		
	: 예 : 아니오 등 관계법령 말 계약을 성실 말참가자격제힌	: 아니오 (등 관계법령이 정 발참가자격제한조치 (을 확약하고 근로조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제2호】

<u>퇴직급여 충당금 반환 각서</u>

○ 서울특별시 운행제한 단속차량 운전원 용역 계약을 체결한 당사는 금전적 이 득을 위하여 근로자의 퇴직을 요구할 수 없으며 퇴직급여 지출 사유가 안될 시 퇴직금을 반환할 것을 본 각서로 확약합니다.

2015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소:

회사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